



금년 650억원 펀드 조성으로 기술사업화 가속화

- CVC 스케일업 펀드(500억)·공공기술 창업펀드(150억) 신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조성된 산업기술정책펀드(누적 총 조성액 2조 4,976억원) 중 금년 3개 펀드 조성을 1차 공고할 계획이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스케일업 7·8호 펀드’(각 250억원, 총 500억원 규모)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3년부터 조성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개 펀드(총 3,671억원 규모)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 CVC는 비금융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서, CVC 펀드는 모기업이 보유한 기술,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펀드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펀드’(총 150억원 규모)도 신규 조성한다.

산업부는 금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여 연구자가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조성된 공공기술 창업펀드는 연구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공공연 연구자 등의 창업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취득, 휴직·겸직 등을 명문화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이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CVC 펀드를 통해 기술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창업펀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국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책임자	과 장	강규형 (044-203-4540)
		담당자	사무관	김예은 (044-203-454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1

「CVC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주요내용

출자규모	○ 200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운용사별 출자금액 각 100억원 이내
최 소 결성금액	○ 최소 500억원 이상(운용사별 최소 결성금액 각 250억원 이상)
선 정 운용사수	○ 2개社 내외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등 ※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변경 등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운 용 사 신청자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 * 단,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에도, 법인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공동 운용(CO-GP) 가능하며, 단, 兩사 모두 본 공고상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1개사 이상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여야 함
운 용 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우대조건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www.kiat.or.kr
접 수 마감시한	○ 2025년 3월 31일(화) 15시까지
최 종 선 정 일	○ 2025년 5월 중
펀 드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 협의하에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 법인 형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이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의거 지정된 분야^{주1)} 또는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 투자분야^{주2)}에서 운용사 모기업(계열사 포함) 또는 펀드 출자기업(LP)과 기업협력^{주3)}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주1) '25.2.17. 현재, 6개 분야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 지정 분야 확대 적용 주2) 산업통상자원부 「新산업정책2.0」전략 내 11대 핵심투자 분야 주3) 기업협력 예시: 공동 R&D·기술사업화(위탁 포함), 기술이전 계약, OEM, ODM, 기술지도·자문, 구매계약, M&A,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참고2

「공공기술 창업펀드」 운용사 선정공고 주요내용

출자규모	○ 100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 소 결성금액	○ 최소 150억원 이상
선 정 운용사수	○ 1개社 内외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등 ※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변경 등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운 용 사 신청자격	○ 제안서 접수일 현재「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접수일자 이전에 국내에 설립된 법인* * 단,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에도, 법인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공동 운용(CO-GP) 가능하며, 단, 兩사 모두 본 공고상 자격을 충족해야 함
운 용 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우대조건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www.kiat.or.kr
접 수 마감시한	○ 2025년 3월 31일(화) 15시까지
최 종 선 정 일	○ 2025년 5월 중
펀 드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협의하에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 법인 형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이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주1)}의 창업기업^{주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주3)}의 출자회사^{주4)} 주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주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주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단, 해당 법 적용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보유 비율은 ‘100분의 30 초과’로 한다 주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단, 해당 법 적용시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주식의 보유 비율은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